

# 「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 운영 규정」 제정규정(안)

## 1. 제정사유

가. 예비교원, 현장교사 및 대학교수의 미래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미래교육 센터 신설(조직이관\*)에 따라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

\* 기존 교육발전연구소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던 미래교육센터를 사범대학 부속 시설로 설치[부산대학교 행정조직 개편계획 확정(2025. 2. 27.)]

## 2. 주요골자

가. 목적,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조직,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
라. 재정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
## 3. 토의사항 : 해당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1) 「부산대학교 행정조직·부속시설 등의 설치·운영과 사무분장규정」

2) 「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운영세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심의

1) 의견 수렴 : '25. 2. 28. ~ 3. 6.

2)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: '25. 3. 12.

3) 교수회 심의 : '25. 3. 20.

4) 교무회의 심의 : '25. 3. 25.

5) 규정 공포: '25. 4. 1.

##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 운영 규정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센터는 예비교원, 현장교사 및 대학교수의 미래교육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예비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
2. 강의·교육 콘텐츠 제작 관련 시설, 장비 등 기술 지원 및 시설 관리
3. 교수-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현장교사 및 학생의 학습역량을 위한 온라인 학습컨설팅 지원
5. 대학교수 및 현장교사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컨설팅 지원
6. 기타 위 업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

**제3조(센터장)**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사범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4조(계약교수 등)** 센터에 계약교수, 전임연구원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사범대학장이 임명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4. 센터 운영 성과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재정과 회계)** ① 센터의 재정은 대학 보조금, 외부지원금, 연구보조금, 기부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재정 관리 및 회계는 해당 사업비 예산집행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을 따른다.

**제7조(운영세칙)**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센터장이 정한다.

## 부 칙(제3028호, 2024. 4. 1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